

「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
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8월 8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 최근익)

가. 제안이유

- 2005. 1. 15.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지정·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
- 2014. 1. 14. 개정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및 「평창군 도시계획 조례」 제33조 별표 19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제1항 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5일 제정된 조례임.
- 그러나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
폐지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
폐지조례안

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